

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6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6(교육명령 등)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·

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(이하 “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”라 한다)은 관할 교육감에게 유치원을 설립·운영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.

1. 중앙교육연수원

2. 시·도 유아교육진흥원
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의 내용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.

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,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·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

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1. 강사수당
2. 교육교재 비용
3.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

제15조의2(공표대상 금액)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1회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
3.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반환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
4. 법 제25조에 따른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한 원비를 징수하여 반환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6(교육명령 등)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·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(이하 “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”라 한다)은 관할 교육감에게 유치원을 설립·운영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.</u> <u>1. 중앙교육연수원</u> <u>2. 시·도 유아교육진흥원</u> <u>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</u>

<신 설>

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의 내용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.

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,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·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1. 강사수당

2. 교육교재 비용

3.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

제15조의2(공표대상 금액)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1회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
3.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반환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
4. 법 제25조에 따른 원비 인상을 상한을 초과한 원비를 징수하여 반환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